

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5. 13.

제 첫 시 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9. 5. 18

다. 상 정 일 자 : 2009. 5. 20.(제1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회의)

2. 제작설명요지 (제작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김평희)

가. 제안이유

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부여, 투표연령 하향조정 (20세→ 19세)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·공포(2009.2.12)됨에 따라 제천시 주민투표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시의 책무를 신설함(안 제2조제4항)
 -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(안 제3조)○ 주민투표권자,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,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(안 제8조, 제9조, 제10조)
 - 주민등록번호→주민등록번호,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
 - 주소→주소, 거소, 체류지

- 주민투표관련 별지서식 작성요령을 법령개정에 맞추어 개정함(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7호서식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홍완식)

-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부여, 투표연령 하향조정 (20세→ 19세)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·공포 (2009.2.12)됨에 따라²⁾
-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표준조례안 (2009.2.11, 선거 의회과 316호)에 의거 작성하고,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법적인 이견은 없음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천시 주민투표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투표제도 운영 및 투표실시에 차질없이 대비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 요지(답변자 : 자치행정과장 김평희)

-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에 따라서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되면 주민투표인 수는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?
(조덕희 의원)
: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.

5. 소수의견

“없음”

2)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(2007.6.28, 2004헌마643)에 따라 개정함

6. 토론요지

“없 음”

7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1. 제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